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4. 10. 8.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안 제3조)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 및 방법(안 제4조)
- 지원정지 및 환수,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 ~ 제10조)
- 바우처 가맹점 지정 등(안 제11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서 ‘지자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청소년의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군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바우처 지원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 18세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연령이 도래하는 당해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에서는 바우처 지원을 카드에 충전하여 발급하는 형식으로 인당 최대 연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함.

- 안 제9조(지원 정지 및 환수) 및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에서는 바우처 지원이 정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11조(가맹점 지정 등)에서 바우처 사용지역을 관내로 하고, 사용처가 되는 가맹점 분야, 가맹 지정 절차에 관하여 정함.

**< 바우처 사용처(가맹점 분야) >**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안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에서는 바우처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고 반납되도록 함.

## 5. 종합검토의견

- 우리 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합당하고 자치사무인 청소년의 복지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므로 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